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진희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5월 29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5월 31일

3.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 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보호와 재난복구 지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재난복구 현장에서의 군 장병 안전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 안전확보 교육, 안전장비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마.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군 장병 지원 관련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군 장병 안전확보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2022년도에 발간된 국방백서를 보면 최근 5년간 재난대응 및 피해 복구 대민지원을 위해 투입된 인원은 2018년(44,500명), 2019년(204,988명), 2020년(674,452명), 2021년(1,111,888명), 2022년(663,233명) 총 2,699,121명이 동원되어 산불, 집중호우 및 태풍, 실종자 수색 및 구조, 코로나19, 농번기 일손돕기 등 다양한 인력지원은 물론 장비를 지원함.(붙임1)
- 2023년 충청도 내에 위치한 A사단의 경우 호우피해를 입은 충청도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지원을 위해 20일간 약 5,300여명의 군 장병이 활동함.
- 타 지역에서는 대민지원을 나갔던 해병대 병사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재난복구현장 지원에 동원된 군 장병 안전확보 문제가 사회적 차원에서 대두됨.
- 이 조례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 대해 현장에 투입되기 전 안전교육부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까지 이들의 안전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난복구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충청도 내에 있는 일부 군 부대의 경우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현장지휘관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나 일반 병사들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한 데이터는 없음.
-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5개 시도(경기, 광주, 전북, 충남, 부산)는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어 사회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현역병, 상근예비역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군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 만이라도 지역 출신과는 상관없이 상해보험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 장병에 대한 재난복구 현장 안전교육, 안전장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및 재정지원 사항을 주로 규정함.
 - 안 제1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 중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군부대 지원 요청으로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군 장병”, “재난복구”, “재난관리물품” 등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재난안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재난복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장에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는 재난복구 현장의 확보를 위해 편의시설, 유류비, 식비 등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안 제6조는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동안 상해를 입은 경우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근거를 규정함.
 - 안 제7조는 재난복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 안 제8조는 안전교육, 안전장비, 상해보험 가입 등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는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4. 5. 31.~`24. 6. 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제정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 대해 현장에 투입되기 전 안전교육부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까지 이들의 안전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난복구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해보험 보장항목, 보장금액, 중복지원, 보험약관 등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정 수준의 보상은 물론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 장병이 실질적으로 보험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연도	지원내용	인원(명)	장비(대)
2018	총계	2,699,121	171,486
	소계	44,560	9,832
	산발지원	8,970	196
	가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원	16,125	8,168
	실종자 수색·구조	1,165	219
	구제역·AI 방역	10,452	1,246
	목살, 지진 피해 지원	7,848	13
2019	소계	204,968	11,484
	산발, 화재	22,242	526
	폭염·가뭄, 태풍·호우, 목살	64,745	2,319
	실종자 수색·구조	4,208	748(군권15)
	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108,985	7,490
	철도·화물 노조 파업 관련 지원	3,900	-
	태양우연, 인건 책수 등	908	401
2020	소계	674,452	49,405
	산발, 화재	1,984	89
	폭염·가뭄, 태풍·호우, 목살	128,699	17,063
	실종자 수색·구조	5,604	778
	AI·ASF 확산 차단	60,161	6,108
	코로나19 대민지원	478,004	24,367
	소계	1,111,888	61,708
2021	산발, 화재	1,031	122
	폭염·가뭄, 태풍·호우, 목살	5,672	131
	실종자 수색·구조	5,932	367
	AI·ASF 확산 차단	201,685	17,047
	코로나19 대민지원	889,120	43,439
	화학사고, 농번기 등	28,448	2
	소계	663,233	40,657
2022	산발, 화재	23,265	1,139
	폭염·가뭄, 태풍·호우, 목살	74,469	4,639
	실종자 수색·구조	2,856	343
	AI·ASF 확산 차단	153,431	28,430
	코로나19 대민지원	405,961	5,897
	화학사고, 농번기 등	2,833	-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지원	418	209